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 회)	

수 산 업 협 동 조 합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과 「수산업법」에서 어업의 범위에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업종별수협 조합원의 자격에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특별회계와 신용사업특별회계 외의 사업부문을 구분한 조항(법 제167조 제2항 후단부터 제8항까지)을 삭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2023년 6월 28일)함에 따라 동법 시행령 내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업종별수협 조합원 자격에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 신설(안 제22조제20호 신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과 「수산업법」에서 어업의 범위에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업종별수협 조합원의 자격에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특별회계 운영조항 폐지(안 제60조 삭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특별회계와 신용사업특별회계 외의
사업부문을 구분한 조항(법 제167조 제2항 후단부터 제8항까지)이
삭제됨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내 신용사업특별회계 운영이
사실상 불필요해졌으므로 관련조항을 폐지할 필요가 있음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
제56조의 제목 “(통지와 최고)”를 “(통지와 독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
1항 중 “최고는”을 “독촉은”으로, “최고를”을 “독촉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최고는”을 각각 “독촉은”으로 한다.

제60조를 삭제한다.

별표 제10호 중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을 “「수산생물질병 관리
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 중 “「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
산물품질관리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업종별수협의 조합원 자격) 법 제10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어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업을 말한다. 1. ~ 19. (생략) <신설>	제22조(업종별수협의 조합원 자격) ----- ----- ----- --. 1. ~ 19. (현행과 같음) 20.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
제56조(통지와 최고) ① 채권청약인에 대한 통지와 <u>최고</u> 는 채권청약서에 적힌 청약인의 주소로 하며, 그 청약인이 따로 주소를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장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통지와 <u>최고</u> 를 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 채권의 채권자에 대한 통지와 <u>최고</u> 는 소유자가 따로 그 주소를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장에게 통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원부에 적힌 주소로 한다. ③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와 <u>최고</u> 는 공고의 방	제56조(통지와 독촉) ① ----- ----- 독촉은 ----- ----- ----- ----- ----- 독촉을 ----- -----. ② ----- ----- 독촉은 ----- ----- ----- ----- -----. ③ ----- ----- 독촉은 -----

법으로 한다. 제60조(신용사업특별회계의 운영) 중앙회는 법 제167조제3항에 따라 수협은행으로부터 받아 신용사업특별회계에 귀속된 배당금을 귀속과 동시에 잉여금(신용사업특별회계의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잉여금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보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우선출자증권을 매입·소각할 수 있다.	-----. <삭제>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5430